

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21057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9. 3.
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·경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,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가. 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나.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052호),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053호) 및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제2105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「교육세법」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”를 “「교육세법」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·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 ① (생 략)	제5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「 <u>교육세법</u> 」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「 <u>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</u> 」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	② ----- 「 <u>교육세법</u> 」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·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영유아특별회계법

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5조 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	(제2항) 「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「교육세법」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 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동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로 지방재정교부금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,
- 국세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고특회계에 우선 편성하는 금액을 제외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입하던 내용을 국세교육세 세입예산액 2호부터 4호까지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개정
- ※ 동시 개정 추진중인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안에서 「교육세법」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을 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내용이 삭제(제3조제2항제2호*) 예정인 바, 교육세의 목적에 맞는 재원의 활용방법 규정 필요
- *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3조(교부금의 종류와 재원) 제2항 제2호 해당 연도 「교육세법」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「영유아특별회계법」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
- 영유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, ❶ 국세교육세 세입예산액 2호부터 4호까지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과 ❷ 그 외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 (붙임 참고)
- ※ ('26 영유특회계 세입) 총94,422억원 중 교육세 21,755억원(23%), 교육세외 72,667억원(77%)

《 국세교육세 배분구조 변화 》

'26년 현행 (영유특 2.2조)		개편(안) (영유특 2.2조)	
세입예산액	전입	세입예산액	전입
(①호) 금융보험업분	고특회계	(①호) 금융보험업분	고특회계
(②호) 개별소비세분	60% (영유특회계) 40% (교부금)	(②호) 개별소비세분	40% (고특회계) 60% (영유특회계)
(③호) 교통에너지환경세분		(③호) 교통에너지환경세분	
(④호) 주세분		(④호) 주세분	

- 개정안은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교육세 전입금 규모가 변동할 수 있으나, 이는 회계 간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에 해당하지 않음
-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을 통해 기존사업이 확대되거나, 신규 사업이 편성될 경우 발생하는 것이나, 동 특별회계는 교육세 전입금이 증가하면 그 외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현 시점에 관련 사업의 확대·신규 편성 여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
 - 이에,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·국장
김은주	오선진	이정규	강민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오선진	044-203-7217	ohsunjin99@korea.kr

(붙임) 참고자료

< 영유아특별회계 세입 추이 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26(본)	2026(추)
세입규모(A+B+C)	9,294,789	9,296,360
- 일반회계 전입	9,267,116	9,268,687
교육세(A)	2,638,044	2,207,564
(비율)	28.4%	23.7%
교육세 외(B)	6,629,072	7,061,123
(비율)	71.3%	76.0%
- 기타 경상이전수입 등(C)	27,673	27,673
(비율)	0.3%	0.3%

※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('25.12.)에 따라 2026년 회계부터 신설
자료: 교육부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